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34
----------	------

제출연월일 : 2024. 2. .
제출자 : 하남시장

1.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조례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 자격검증 강화를 위한 위원 선정방식 개정(안 제8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반영(안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
다. 동의 행정적 지원 관련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라. 주민자치협의회 회원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까지 확대(안 제23조의2제2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3. 12. 15. ~ 2024. 1. 4.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원안동의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과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수한” 을 “이수하고 공개모집에 따라 신청한” 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를 “심사를 거쳐”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정하되, 이 경우 예비후보자 선정 방법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를 “정한다” 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1항 중 “개최하며” 를 “개최할 수 있으며” 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동의 행정적 지원)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방식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을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2.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제23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동은 위원장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자치행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팀장 직위 · 성명	자치행정팀장 이광호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백진주 (031-790-523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주민 자치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u>이수한 사람</u>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라 한다)가 <u>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u> 선정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u>공개추첨방식: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 이상으로 한다.</u></p> <p>2. <u>선발방식: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선정하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한다.</u></p> <p>② (생략)</p>	<p>제8조(위원의 선정) ① ----- ----- <u>이수</u> <u>하고 공개모집에 따라 신청한</u> --- ----- ----- <u>심사를 거쳐</u> -- ----- ----- ----- ----- ----- ----- ----- -----.</p> <p><삭 제></p> <p><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추첨방식 또는 선발방식 중 선택하여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1. 결원 등으로 인해 추가로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로서 모집인원이 10명보다 적을 경우

④ (생략)

제9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② (생략)

③ 관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정하되, 이 경우 예비후보자 선정 방법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 ⑥ (생략)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정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

----- .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20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 ⑨ (생략)

제21조 (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 7.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 (주민총회) ① -----
----- 개최할 수 있으며-----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 (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

----- 수립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동의 행정적 지원)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방식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을 보조하는

제23조의2(주민자치협의회) ① (생략)

② 협의회는 각 동 회장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제24조(감독) ①·② (생략)

<신설>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2.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제23조의2(주민자치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동은 위원장이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행안부 표준조례 개정안 발췌서

【안 제8조 관련】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천하거나 선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음)

【안 제14조 관련】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 제20조 관련】

제14조의2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안 제21조 관련】

제14조의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안 제24조 관련】

제23조(감독) ③ 주민자치회는 제2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